

# 의안 검토 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2. 건명 :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 
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건요지 : 별첨
4. 검토의견 : 별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1월 29일

행정자치위원회

전문위원 한봉전

#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7년 1월 12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자치입법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규정은 「행정절차법」과 중복규정으로 정비함(안 제3조제2항).
- 나.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해 사업소장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1항).
- 다. 「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법무담당관 명칭을 변경함(안 제4조 및 제6조).
- 라. 제출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제출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은 「행정절차법」 등과 중복규정으로 삭제함(안 제7조제2항).

## 3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안은

「행정절차법」 및 「법제업무운영규정」에 의거 관련법령과 중복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고 사업소장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